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125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5년 8월 29일
4. 회부일자 : 2025년 8월 29일

II.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안이유

-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 추경과 시정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2.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2조 192억 5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0조 9,393억 6천만원에
대비하여 2.1%(1조 798억 9천 9백만원) 증가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조 6,838억 1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9,526억 9천 7백만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4조 3,354억 4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1,272억 2백만원) 증가함.

< 서울특별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52,019,259	50,939,360	1,079,899	2.1
일 반 회 계	37,683,811	36,731,114	952,697	2.6
특 별 회 계	14,335,448	14,208,246	127,202	0.9

3.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가. 세입

- 2025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56억 5천 9백만원에서 3,500억원(302.6%) 증가한 4,656억 5천 9백만원이며, 모두 일반회계 세입에 반영됨.

<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465,659	115,659	350,000	302.6
일 반 회 계	457,159	107,159	350,000	326.6
도시개발특별회계	8,500	8,500	-	-

나. 세출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 3,094억 8천 9백만원에서 24억 5천 2백만원 (1.2%) 증가한 1조 3,119억 4천 1백만원임.

<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1,311,941	1,309,489	2,452	0.2
행정운영경비	1,172	1,172	-	-
재 무 활 동	747,901	745,501	2,400	0.3
사 업 비	430,489	430,489	-	-
예 비 비	132,379	132,327	52	-

-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4억 5천 2백만원(0.6%) 증가한 4,390억 5천 6백만원이 각각 편성됨.

< 기획조정실 소관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1,311,941	1,309,489	2,452	0.2
일 반 회 계	872,885	872,885	-	-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439,056	436,604	2,452	0.6

- 기획조정실의 추경사업은 모두 재무활동으로,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추경 세입세출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를 5천 2백만원 증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여유자금의 신속적 활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한 예탁금을 24억원 증액함.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

- 2025년 하반기 세계 경제는 통상 마찰 격화와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성장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주요국들의 낮은 성장률,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 및 금융 불안정성 등이 세계 경제의 하방 압력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또한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건설투자 부문의 부진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따른 수출부진,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향하여 대부분의 기관이 0%대 성장을 전망하였음.

〈 주요 기관의 국내 성장률 전망 현황 〉

(단위 : %, %p.)

구 분	기존 전망치	시점		수정 전망치	시점	변동폭
정부	1.8		'25.1	0.9	'25.8	△0.9
한국은행	0.8		'25.5	0.9	'25.8	0.1
KDI	0.8		'25.5	0.8	'25.8	—
IMF	1.0		'25.4	0.8	'25.7	△0.2
OECD	1.5		'25.3	1.0	'25.6	△0.5

※ 각 기관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6월 4일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경기 진작(17조 3천억원), 민생 안정(5조 3천억원), 세입경정(10조 3천억원) 등을 내용으로 3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¹⁾(6.23.)하여 기정예산(687조 1천억원)

대비 16조 2천억원이 증액된 703조 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중 민생 안정 분야에 약 12조 2천억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반영되었음.

-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총규모는 약 13조 9천억원으로, 정부는 이 중 약 1조 7천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서울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10%(광역: 5%, 기초: 5%)와 달리 25%(시: 15%, 구: 10%)를 부담하게 되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6월 결산 이후 순세계잉여금 등의 여유재원을 조정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이미 끝낸 이후였기 때문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매칭예산을 편성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정부는 1차 지급분은 전액 국비로 지급하되 2차 지급분 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유재원을 활용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매칭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음.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채의 발행 사유²⁾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요청하였고, 국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을 반영한 2건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음.

1) 국무회의 의결 : 6.19., 국회 제출 : 6.23. 국회 본회의 의결 : 7.4.

2)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 그러나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는 국회 일정상 9월 말로 예정되어 있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차 지급일(9월 22일) 기한을 맞출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채 3,500억원을 발행하되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예탁된 3,500억원을 다시 일반회계에 예탁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3)에 활용할 계획임.
-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감액하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의 취약계층 돌봄 강화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248억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승객 감소, 운영 적자 누적 등으로 인해 올해 말 기준 으로 약 1조원의 누적 부채가 예상되는 시내버스조합에 1,375억원을 지원 하고자 하는 것임.

< 2025년도 서울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점투자 분야 >

분 야	주요 내용	추경안
정부추경 등 대응(9,236억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8,988억원 (국비: 5,488억원)
	기타 국고보조사업	248억원
대중교통 재정지원(1,375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375억원

3) 해당 사업은 행정국 세출사업으로 편성됨(사업별설명서 205p.).

2.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가. 세 입

- 2025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00억원이(306.6%) 증액된 4,656억 5천 9백만원이 편성됨.

<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변경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사 유
기획조정실 합계	465,659	115,659	350,000	
일반회계	457,159	107,159	350,000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수금	350,000	-	350,000	- 재난관리기금 여유자원 여탁금 반영
도시개발특별회계	8,500	8,500	-	

- 증액사유는 서울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을 위한 시비 매칭비용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선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채 3,500억원을 발행 하여 발생하는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한 후에 이를 다시 일반회계에 예탁할 예정이며, 이를 활용하여 행정국의 세출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을 신설할 계획임.

나. 세 출

-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1조 3,119억 4천 1백만원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5천 2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4억원이 각각 기정예산 대비 증액되어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정예산 2.57% 보다 0.05%포인트 감소한 2.52%임.

<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 세출 편성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내역
기획조정실 합계		1,311,941	1,309,489	2,452	
일반회계		872,885	872,885	0	
도시개발특별회계		439,056	436,604	2,452	
예산담당관	예비비 (도시개발특별회계)	4,128	4,076	52	-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추경 세입세출 규모 조정을 위해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도시개발)	434,928	432,528	2,400	- 도시개발특별회계 여유자금의 신속적 활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

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 부합 여부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⁴⁾,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집행가능성, ▶한시성 등을 요건으로 함.

<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

요건	세부내용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연내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한시성	추경안에 편성되는 재정사업이 한시적 재정사업일 것

4)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후단 생략)

- 이번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추진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을 위한 매칭시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등의 추경예산안 편성의 요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발행한 지방채로 확보한 재원을 해당 기금의 설치 목적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지출하지 않고 여유재원으로 간주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이는 서울시의 작위라기보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방비 부담 비율을 통보한데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발행 승인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6